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대 사고 외 철도사고등 관리 강화 〉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037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중 수

목 차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2209037)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중대 사고 외 철도사고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보고 및 공개 (안 제61조제3항 및 제4항)	2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220903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준호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3. 18.
3. 회 부 일 : 2025.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고 조사 완료 시 예방대책의 형태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구체적 후속조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시스템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의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중대 사고 외 철도사고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보고 및 공개 (안 제61조제3항 및 제4항)

현행법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²⁾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그 외의 철도사고등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등³⁾이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개정안은 즉시 보고대상이 아닌 철도사고등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철도운영자등이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2) “철도사고등”이란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참고자료 1】 참조
- 3) “철도운영자등”이란 철도운영자(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철도시설관리자(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현행	개정안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u>결과</u>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결과(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다)----- -----. 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상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철도사고등부터 적용한다.

가. 검토의견

즉시 보고대상인 중대 철도사고등(제61조제1항)과 그 외 철도사고등(제61조제2항)의 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2024년 기준 전체 철도사고등 186건 중 중대 사고가 10건(5.4%), 그 외 사고가 176건(94.6%)으로 큰 편차를 보임.

【 철도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 】

(단위 : 건)

구분	유형	‘20	‘21	‘22	‘23	‘24
중대 철도사고등 (제61조제1항)	열차충돌	1	0	1	1	3
	열차탈선	3	3	4	7	4
	열차·차량화재	0	0	0	0	3
	사상자 3인 이상	0	0	0	0	0
	5천만원 이상 재산피해	1	1	1	1	0
	소계	5	4	6	9	10
중대사고 외 철도사고등 (제61조제2항)	중대사고 외 철도사고*	53	60	76	59	35
	운행장애	222	139	131	139	123
	준사고	미시행	27	22	19	18
	소계	275	226	229	217	176
총계		280	230	235	226	186

* 차량탈선, 건널목 사고, 공중사상사고 등

※ 자료: 국토교통부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철도의 특성상 중대 사고가 아닌 철도사고등의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①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화, ②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보고 의무화, ③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공개 주제로 분류하여 검토함.

1)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화

중대 사고 외 철도사고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의무화의 경우 현재에도 관련 지침·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사고등에 대한 종결보고 시 ‘철도사고등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또한, 현행법 제8조⁵⁾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관리체계 점검을 위한 「철도안전관리체계검사 매뉴얼」

4)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5조(철도사고등의 조사보고) ④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후에 규칙 제86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중간보고 및 종결보고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2. 종결보고는 발생한 철도사고등의 수습·복구(임시복구 포함)가 끝나 열차가 정상 운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 보고서와 별표 2의 사고현장상황 및 사고발생원인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 할 것.

가. 철도사고등의 조사 경위

나. 철도사고등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

다. 철도사고등의 원인 분석

라. 철도사고등에 대한 대책 등

⑤ 제3항의 초기보고 및 제4항제2호의 종결보고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5) 「철도안전법」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통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확인할 수 있다.

1. 정기검사: 철도운영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수시검사: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 확인 및 안전관리체계 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정기 및 수시 검사 시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⁶⁾ 따라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상 의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철도사고 등의 발생 후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보고 의무화

현재 안전관리체계 유지를 위한 정기(연 1회)·수시 검사 시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 이행 적정성 여부’가 평가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 이행을 촉구하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례도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그 이행상황 보고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과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해당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매뉴얼은 【참고자료 2】 참조

【 재발방지 대책 이행 관련 시정조치 명령 사례 】

연도	세부 시정조치 사항
대표사례1 한국철도공사 (’20년)	사례1 : 외부계약자 장비 이동시 적격성 갖춘자 미동승 ☞ 모터카 운행 시 재발방지 대책 준수 필요 - 외부 계약자가 장비 운행 시 수립된 재발방지대책 「모터카 및 트롤리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행할 것
대표사례2 대전교통공사 (’21년)	사례2 : 탈선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사고사례 교육) 시행 미흡 ☞ 탈선사고 관련 재발방지대책(사고사례교육) 시행 철저 - 재발방지대책(사고사례 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부서는 즉시 시행할 것

※ 자료: 국토교통부

3)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공개

현재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⁷⁾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한 내용이 철도사고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중대 철도사고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사고 원인, 개선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 중대 사고 외의 철도사고등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사항이 없음.

7)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제7조(철도운영자의 사고보고에 대한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등이 보고한 내용이 철도사고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관련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고조사와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열차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 철도사고등과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열차운전실 등의 음성자료 및 기록물과 그 번역물
5. 열차운행관련 기록장치 등의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시된 의견
6. 철도사고등과 관련된 영상 기록물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경우 대책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다만,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기업의 경영정보 유출 우려,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을 비공개하고 있는 해외 사례⁸⁾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임.⁹⁾

한편, 개정안은 중대사고 외 철도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이행상황 보고 및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상으로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이행상황 공개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철도 사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제도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주요 철도사고(충돌·탈선·화재 등)에 대해 사고 개요, 원인, 개선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 철도사고 외의 사고 및 재발 방지대책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3】 참조

9) 참고로, 중대 철도사고등과 그 외 철도사고등의 재발방지 대책 관련 현행 체계 비교는 【참고자료 4】 참조

나.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철도사고등의 종결보고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중임. 이미 운영중인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개정 실익이 적고, 현장 대응의 유연성이 떨어질 여지가 있음.

또한,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 별도 공개 시 기업의 경영정보나 비밀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점, 중대 철도사고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대책 이행 상황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점,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철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공개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를 통해 사고·장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관리 중으로 동일한 목적의 후속조치 관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

현재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므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1

철도사고등 유형 관련 현행 법령

○ 철도사고등 :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

법 률	철도사고 :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시 행 규 칙	1. 철도교통사고: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충돌사고: 철도차량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동물 및 조류는 제외한다)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나. 탈선사고: 철도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다. 열차화재사고: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라. 기타철도교통사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가. 철도화재사고: 철도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나. 철도시설파손사고: 교량·터널·선로, 신호·전기·통신 설비 등의 철도시설이 파손되는 사고 다. 기타철도안전사고: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
법 률	철도준사고 :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시 행 규 칙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 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7.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법 률	운행장애 :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시 행 규 칙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참고 2

철도안전관리체계검사 매뉴얼 中

검사항목	5.3 재발방지대책 절차 수립 및 전파
기술기준	5.3.1 재발방지 철도운영자등은 사고 및 장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5.3.2 재발방지대책의 전파 철도운영자등은 사고 및 장애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대책을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하여 전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철도운영자등에서 발생한 동일 유형의 철도사고등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포함하여야 한다.
작성지침	5.3.1 재발방지 가.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절차를 기술한다. 1) 철도사고 등의 발생 원인이 규정위반으로 판명된 경우와 복구·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소속 또는 직원, 책임자에 대한 대책 2) 조사결과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시설개량, 제도개선 등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3) 재발방지대책의 효과 분석 4) 기타 철도운영자등이 정하는 사항 나. 필요 시 상기 절차는 기술기준 5.2.1의 사고 및 장애를 기록, 조사, 분석하기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에 포함할 수 있다. 5.3.2 재발방지대책의 전파 가.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결과를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파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1) 조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기록의 유지 2) 조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피드백(교육, 다른 철도운영자등에서 발생한 동일 유형의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 포함) 나. 필요 시 상기 절차는 기술기준 5.2.1의 사고 및 장애를 기록, 조사, 분석하기 위한 철도운영자등의 운영절차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기준	[목 적]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동종사고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실행 및 유지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전파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평가자료]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2)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결과의 전파 관련 자료(절차 및 필요 시 관련 문서) [승인] 1)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 2)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여부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4)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결과의 전파 여부 [정기 및 수시] 1)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여부 2)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3)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의 이행 적정성 여부 4)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대책수립 결과의 전파 여부

참고 3

해외 주요국 철도사고등 공개 기준

-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가철도의 주요 철도사고(충돌·탈선·화재)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고, 그 외 경미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등은 비공개

구분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범위	철도사고등 공개여부
미국	주요철도사고 (연방철도청(FRA) 홈페이지)	사망자/중상자 발생 또는 15만\$ 이상 재산피해 발생	· 사고유형 · 사상자수 · 재산피해 규모 · 사고위치 등	비공개 (별도관리)
독일	주요철도사고 (연방철도조사국(BEU) 웹사이트)	중대한 사고 (EU규정 준수)	· 사건개요 · 원인분석 · 피해규모 · 권고사항	비공개 (별도관리)
일본	주요철도사고 (운수안전위원회(JTSB) 연례보고서)	사망자 발생, 5명이상 부상 등	· 사고개요 · 원인분석 · 권고사항	비공개 (별도관리)
프랑스	주요철도사고 (육상교통조사위원회(BE A-TT) 웹사이트)	중대한 사고 (EU규정 준수)	· 사고개요 · 원인분석 · 권고사항	비공개 (별도관리)
영국	주요철도사고 (철도사고조사부(RAIB) 웹사이트)	중대한 사고	· 사고개요 · 원인분석 · 권고사항	비공개 (별도관리)

참고 4

중대 철도사고등과 그 외 철도사고등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중대 철도사고등 (제61조 제1항)	그 외 철도사고등 (제61조 제2항)
사고종류	- 열차 충돌 - 열차 탈선, - 열차·철도차량 화재 - 사상자 3명 이상 - 재산피해 5천만원 이상	기타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보고시행	즉시(30분 내) 보고	1시간내 ~ 72시간 내 보고
재발방지 대책	(운영사) 자체 수립 (항철위) 사고 조사 및 수립 권고	(운영사) 자체 수립
재발방지 대책 이행관리	(운영사) 분기, 반기 자체 점검 (항철위) 주기 점검(공문 등)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시 점검 (국토부) 재발방지 회의 실시·점검 및 운영사의 이행 보고, 철도안전감독관 수시 점검	(운영사) 분기, 반기 자체 점검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시 점검 (국토부) 공문 등으로 시정조치 확인 및 이행실적 현장 확인, 철도안전감독관 수시 점검
정보공개	(항철위) 사고원인, 개선사항이 포함된 조사보고서 공개 - 상세 철도사고정보 비공개	상세 철도사고정보 비공개
사고처리 절차	철도사고 등 발생 즉시보고 (열차사고, 대규모사고 등) 조사보고 (이외) 초기 보고 사고현황 등 (30분 이내) 사고현황 등 (60분 이내) 중간 보고 사고수습 및 복구사항 (1일 2회 또는 상황변동시) 종결 보고 사고 경위, 원인, 대책 등 (복구일 기준 다음달 15일)	